

# 예산총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5,459,723	18,463,792
일반회계	532,443,233	15,973,297
특별회계	83,016,490	2,490,495
공기업특별회계	74,071,677	2,222,1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006,731	750,20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494,911	824,84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570,035	647,101
기타특별회계	8,944,813	268,344
주택사업특별회계	455,150	13,65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605,967	138,179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1,893	1,85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3,811	90,114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8,400	2,0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0,592	9,618
기반시설특별회계	429,000	12,870

제 2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08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5,394 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08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1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8 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